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5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23.

발 의 자 : 권영세 · 강대식 · 최영희
서일준 · 태영호 · 정동만
김용관 · 하영제 · 주호영
김희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을 규정하면서, 여권 · 운전면허증 ·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는 국가보훈증 · 장애인등록증 · 외국인등록증 · 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이 기록 ·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분증명서로 제시하고 있음.

이렇게 다양한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나, 본인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자격증 등이 신분증명서로 사용함에 따라 대리투표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· 여권 · 운전면허증 · 공무원증 · 장애인등록증 ·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, 투표관리관은

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7조제1항 및 제3항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7조제1항 중 “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·운전면허증·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. 이하 “신분증명서”라 한다)”을 “주민등록증·여권·운전면허증·공무원증·장애인등록증·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(이하 “신분증명서”라 하며, 해당 신분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이 신분증명서를 갈음하여 발행한 서류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투표관리관은”을 “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제158조제3항 중 “사전투표관리관은”을 “사전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”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)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<u>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·운전면허증·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. 이하 “신분증명서”라 한다)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.</u>	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<u>주민등록증·여권·운전면허증·공무원증·장애인등록증·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(이하 “신분증명서”라 하며, 해당 신분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이 신분증명서를 갈음하여 발행한 서류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투표관리관은 身分證明書を 제시하지 아니한 選舉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	③ <u>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</u> ----- -----

④ ~ ⑧ (생략) 제158조(사전투표) ① . ② (생략) ③ <u>사전투표관리관은</u>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“사전투표관리관”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. ④ ~ ⑧ (생략)	----- -----. ④ ~ ⑧ (현행과 같음) 제158조(사전투표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사전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~ ⑧ (현행과 같음)
--	---